

「KEB 하나 동반성장 통장」 특약

제 1 조 적용범위

이 특약은 “KEB 하나 동반성장 통장(이하, ‘이 예금’이라 한다)”에 적용하며,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「예금거래 기본약관」 및 「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약관」을 적용합니다.

제 2 조 계정과목

이 예금의 계정과목은 기업자유예금으로 합니다.

제 3 조 가입대상

이 예금의 가입대상은 법인 및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개인사업자로 합니다.

제 4 조 가입금액

이 예금의 가입금액에는 제한이 없습니다.

제 5 조 제한사항

이 예금의 출금은 금융결제원 CMS 지급지시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며, 창구·인터넷/스마트폰/폰뱅킹·CD/ATM 등을 통한 출금은 불가능합니다.

제 6 조 이자지급

- ① 이 예금에는 영업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된 금리가 적용됩니다.
- ② 이 예금의 이자는 매년 3 월, 6 월, 9 월, 12 월의 제 3 금요일을 기준일로 선택하여 기준일에 이온 익일 (이하 ‘원가일’이라한다)에 원금에 더합니다.
- ③ 제 2 항의 예금이자자는 최초 예금일 또는 원가일로부터 원가일 또는 지급일 전날까지의 기간을 이자계산 기간으로 하고, 매일 최종잔액을 평균하여 영업점에 게시한 이율로 계산합니다.
- ④ 이 예금의 적용 금리는 변경될 수 있으며, 금리 변경 시에는 변경일로부터 바뀐 금리가 적용됩니다.

<부 칙>

(시행일 등) 이 특약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.

<부 칙 1>

이 특약은 2016년 6월 7일부터 개정 시행합니다.